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(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) 공시송달 공고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4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



1. 건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 부과 예정액	공시송달 내용
(주)다인아인앤씨 (익산 송학동3차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)	200111-0*****	광주 남구 봉선로79번길 2, 3층	이*	1,000,000원 (자진납부 시 800,000원)	익산 송학동3차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현장의 2024.2월분 공제부금 2,132,000원 미납에 따른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

4. 공고기간: 2026. 6. 4. ~ 2026. 6. 24.
5.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2과 근로감독관 김창균(062-975-643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